

보도시점 2026. 6. 21.(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6. 6. 19.(금)

주거·교육 공간 중심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개선한다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6월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공동주택,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시 안전기준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6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으나,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후방영상장치 및 비상 작동제어장비 설치, 주간 작업 및 3인 1조 작업 원칙 등

** 지방정부, 지방정부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공동주택별로 계약한 민간업체 등 모두 해당

먼저 청소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와 접근경보음 발생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를 설치하여 차량 이동 시 운전자가 보행자의 접근을 확인하고, 보행자에게 차량 후진 중임을 알리도록 한다. 집계차의 경우 작업석에 거울 또는 영상확인장치를 설치하여 작업반경 내 보행자 및 작업자의 접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작업과정시 준수해야할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작업자는 보행자에게 청소작업 중임을 알리는 작업구역 안전표지판, 입간판, 경계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등하교 시간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시간을 피해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시간을 시설 관리주체와 협의·조정하고, 작업 일시, 차량 종류 등 작업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또한, 작업인력에 대한 기준도 신설한다.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 외의 민간 업체는 인력 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상 1조를 이루어 작업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와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 최대적재량 2톤 이하의 청소차량 및 작업반경 내 보행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짐게차량으로 작업하는 경우는 제외

추가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자는 매월 1회 이상의 자체 안전 교육과 안전장치 정기 점검을 시행토록 했으며, 안전기준 준수를 위해 국가 및 지방정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인건비, 안전장비 구입비, 차량 구입비,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비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물성잔재물을 활용하여 화장품의 원료물질 또는 제품으로 제조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비료, 연료 등으로 제한된 식물성잔재물의 재활용 가능 유형에 제품의 원료와 화학제품 제조 유형을 추가한다.

또한, 농작물의 부산물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제조에 사용하려는 경우, 기존에는 폐기물 재활용업과 가축분뇨처리업 허가가 모두 필요하나,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가 아닌 신고 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신규 매립지 확충이 어려운 지역에서 매립용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이미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선별·재활용할 수 있도록 굴착 허용 기준을 유연화하고,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 해당자의 사업장 상시근무 조건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혼선을 해소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1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을 비롯해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이재	(044-201-7340)
		담당자	사무관	권용락	(044-201-7345)
담당 부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책임자	과 장	황남경	(044-201-7421)
		담당자	사무관	박상현	(044-201-7424)

연번	주요내용	조문번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4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추가 - 「우정사업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처리대행자에 포함 	제8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의 예산 지원 범위 규정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에 대한 예산지원 가능 항목으로 인건비, 차량구입비, 안전장치 설치비, 보호장구 구입비를 규정 	제8조의5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 장소 규정 - 공동주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안전기준 적용 장소로 규정 	제8조의6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재배시설’을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제외 - 폐기물 재활용시설 분류에서 버섯재배시설을 삭제하고, 폐기물로 버섯 제조를 위해 압축, 성형, 파쇄 등 재활용시설 필요시 개별 시설로 등록 	별표 3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12건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마련 - 후방영상장치, 경보음 발생장치 등 설치, 2인 이상 1조를 이루어 작업, 등하교 시간을 피해서 작업 등 준수사항 마련 	제16조의3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매립시설 굴착기준 유연화 - 공익차원의 정비사업으로 허가기관 인정 시 굴착 허용 및 굴착 시 폐기물 처리를 위한 배출자 변경신고 규정 정비 	제18조 별표1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합성확인 의제처리시 제출서류 규정 - 동일한 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처리시 적합성확인 의제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량, 보관시설 사진 등 제출 서류 규정 	제34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처리시설 정기검사 내실화를 위하여 제출 서류 추가 및 관련 서식 구체화 - (서류) 허가증 또는 설치승인서·신고서 사본을 제출토록 하여 검사기관이 정기검사시 시설 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서식) 검사신청서 내 ‘업종’을 법 제4·5조에 따른 공공시설, 제25조에 따른 민간시설(위탁 또는 자가처리)로 구체화 등 	제41조, 별표10, 별지서식 제21호의9, 제23, 제29~제3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분류코드 및 재활용 유형 신설 - (폐암면) 농업용으로 사용 후 배출되는 폐암면에 대한 폐기물 세부분류 신설 - (태양광 폐패널) 기존 “폐태양전지·전자기기폐이스트·태양광폐패널”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분리 - (바이오가스 공정오니) 바이오가스화 공정 후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에 대한 세부분류 신설 	별표 4 별표 4의3

연번	주요내용	조문번호
6	<p>○ 폐기물 재활용 유형(R-1, R-2) 합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R-1유형에만 적용되는 일정한 규격의 용기나 상자에 넣거나 포장하여 재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R-2 유형에도 확대 	별표4의2
7	<p>○ 동·식물성 잔재물 재활용 가능 유형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부산물, 동·식물성 잔재물, 버섯폐배지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 가능 유형 추가 	별표4의3
8	<p>○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기술인력 대체 기준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시 폐기물처리기술사의 대체 가능 인력으로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종사자 규정 	별표4의4
9	<p>○ 화력·열병합발전 연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기성오니 발생시설 범위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 외에 추가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포함 	별표5의3
10	<p>○ 폐기물처리업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업장 상시 근무 명시</p>	별표8
11	<p>○ 폐기물 처리 신고 대상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활용하려는 경우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처리 신고 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함 	별표16
12	<p>○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서 내 종이팩 항목 분리·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이팩 분리배출 발생·회수량 파악을 위해 배출실적 신고 시 종이류를 종이류, 종이팩으로 분리·신설 	별지 4호의10 서식